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7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유만희,
유정인, 이상욱, 장태용,
허 훈, 홍국표, 황유정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지난 1월 2일 개정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」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‘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7월 3일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아울러,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 일부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형식(체제)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 신설(안 제10조 신설)
- 나.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함 (안 제12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.

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, 제6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, 제9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제10조를 제5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(이하 “권익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
2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

위탁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 제1항제5호 중 “안전과 인권보호를”을 “안전보장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</u> (생 략)	<u>제4조</u> (현행 제3조와 같음)
<u>제4조</u> (생 략)	<u>제3조</u> (현행 제4조와 같음)
<u>제5조</u> ~ <u>제5조의4</u> (생 략)	<u>제11조</u> ~ <u>제11조의4</u> (현행 제5조 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2조(표창)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 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 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
<u>제6조</u> (생 략)	<u>제9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0조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(이 하 “권익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에 대한 상담과 지원</u> <u>2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 를 위한 교육 및 홍보</u>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

<신설>

6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10조 (생략)

3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· 제7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안전보장을

6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1조 (생략)

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 ¹⁾
2	제10조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)	△	권익지원센터 설치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문의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3	제12조(표창)	△	표창 제작 소요금액 ²⁾ 발생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○ 동 개정안 제10조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)에 따라 센터 설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부서(서울시 복지정책실) 확인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- 다만 현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부설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(붙임 참고)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 중 사회복지사 일부(5,439명³⁾)가 포함됨에 따라 일부 기시행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,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전부⁴⁾를 포함하지 않아 별도의 센터 설치를 고려할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

※ 장기요양요원⁵⁾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세부구분	인원
장기요양요원	요양보호사 / 사회복지사 / 의사 / 간호요원(간호사+간호조무사) / 영양사 / 기타	146,612

○ 동 개정안 제12조(표창)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, 관련부서(서울시 복지정책실) 확인결과 표창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1) 동 개정안 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은 현행 같은 조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제1항제5호를 2개로 나누고 ‘인권보호’를 ‘권익보호’로 용어 변경을 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어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) 사업시행 시 연례반복적 소요비용으로 표창대상 수에 따라 향후 예산(사무관리비)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- 다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

3) 서울시 관련부서 현황자료

4) 115,673명, 2023년 보건복지통계연보(보건복지부)

5) 장기요양요원 의미

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를 포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부설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(안 제10조 관련)

□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(2024. 3월 발족식 개최)

○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 기능

- 장기요양기관 종사자(장기요양요원)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

▶ 권익지원센터, 이런 일을 합니다



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존중받도록

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신설

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 라인과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, 이용자를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



•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안전하도록

성희롱, 산업재해 예방 사업 확대

장기요양현장 맞춤형 기관 방문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예방교육 광범위 시행, 예방 매뉴얼 개발 및 확산



• 권익보호의 가장 중요한 환경, 장기요양기관과 함께

장기요양기관 컨설팅 및 기관운영자 교육 신설

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컨설팅, 성희롱 예방 체계 컨설팅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관련 기관운영자 교육



• 권익지원의 기본

종사자를 위한 권익지원 교육 시행과 자료 개발

권리찾기수첩 및 상담사례집 발간, 종사자 노동법 교육, 인권 교육

자료 :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